##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5

발의연월일: 2021. 12. 6.

발 의 자: 박홍근 · 김승남 · 김원이

김정호 • 서영석 • 송옥주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이상헌 · 최인호 · 한준호

황운하 의원(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비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심의회의 지위나 역할이 혼재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18조).
-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 정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제4조).
- 다.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 5. 관할 구역 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특별 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위생관리 등 사육환경"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비감염 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 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 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 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 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

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한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 2.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 3.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 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0조 또는 제20조의2"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제20조제1항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 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0조"를 "제20조 또는 제20조의2"로 한다.

제53조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를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 조의2제1항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감염 살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	제1조(목적)
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u>발</u>	<u>발</u>
<u>전과</u>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	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생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
<u>가축방역심의회</u>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u>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
	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
	<u>행</u>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
	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 ③·④ (생 략)

-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⑥ (생 략)
-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 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 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 을 부여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 5. 관할 구역 내 수출 또는 수 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 ⑥ 제5항-----
- 1. ~ 5. (현행과 같음)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u>위생관리</u> 등 사육환경

② • ③ (현행과 같음)

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 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 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 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 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 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 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 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 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 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 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 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 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

•
<단서 삭제>
<u> </u>

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 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비감염 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우역, 우폐역, 구 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 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 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 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 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여야 한다.

-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 한는 경우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 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한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20조</u>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간의범위에서살처분을유예하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장소에격리하게할수있다.

-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 2.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 3.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 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한 후 그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한다.

세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1
		ス	ll20조	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 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 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 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 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 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 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 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 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 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 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

는 제20조의2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
행과 같음)
2
<u>স</u>
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⑥ (생 략)

-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 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 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 지 및 제8항, <u>제20조제1항</u>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u>본문</u>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
    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u>제20조제1항</u>
제48조(보상금 등) ①
M4011(1 0 0 0 ) U
1.・2. (현행과 같음)
3본문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
항 및 제2항에

3의2. ∼ 6. (생 략)

- ② (생략)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5. (생략) ④ ~ ⑦ (생략)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제20조제</u> 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u>제20조제1항</u>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의2제1항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세49조(생계안정 지원) ①
제20조제1
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

받아	실제	사육	한	ス	-)에게	예
산의	범위여	에서	생기	계약	반정을	위
하 비	용을	지워'	핰 -	수	있다	

### ② (생략)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2. 제20조제2항 <u>본문(제28조에</u>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 3. 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20조의2제1항에
2 <u>본문(제28조에</u>
<u>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3.・4.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 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0조, 제20조의2,----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 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 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 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 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 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 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 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 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_\_\_\_\_\_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ス)시) ① -----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 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 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 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3)00 Z 3)00 Z 6)0
<u>제20조, 제20조의2,</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 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액할 수 있다.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 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 관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 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
	역조치 요구)
	<u>제20조,</u>
	제20조의2,
세	56조(벌칙)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 4. (생략)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u>는 제20조의2제1항에</u>-----
  - 2. ~ 4. (현행과 같음)